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호

「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732, 2020.10.2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8일
국토교통부장관

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전단 중 “포털시스템),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,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”를 “포털시스템) 상의 지하정보”로, “자료와 시추조사, 투수시험, 지하물리탐사”를 “자료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시추조사, 투수시험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기준 자료를 제외한 현장조사 결과에는 별표 12에 규정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”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지반 및 지질 현황) 지반 및 지질 현황의 작성에 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하안전영향평가”는 “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”로 본다.

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(업무지침)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지반 및 지질 현황)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,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(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),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,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의 기존 자료와 시추조사, 투수시험,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.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지반 및 지질 현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포털시스템) 상의 지하정보 ----- ----- 자료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시추조사, 투수시험 -----. --- 경우 기존 자료를 제외한 현장조사 결과에는 별표 12에 규정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---.</p>
<p>제18조(지반 및 지질 현황)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,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(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),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,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의 기존 자료와 시추조사,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</p>	<p>제18조(지반 및 지질 현황) 지반 및 지질 현황의 작성에 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하안전영향평가”는 “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”로 본다.</p>

다.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
활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
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
표기하여야 한다.

[별표 12] 현장조사 항목 및 수량 (제9조 및 제18조 관련)

항목		지하안전영향평가	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	최소수량
현장 시험	시추조사	○	○	지하굴착공사 : 3공 터널공사 : 100m 당 1공
	표준관입시험	○	○	시추공별 풍화암까지 1m간격
	공내지하수위측정	○	○	모든 시추공
	현장투수시험	○	○	지층별 1회
	현장수압시험	○	○	지층별 1회
	공내전단시험	○	○	지층별 1회
	공내재하시험	○	○	지층별 1회
	양수시험	○	△	사업별 1회
	지하수유향유속시험	○	△	사업별 1회
	순간충격시험	○	△	사업별 1회
물리 탐사	GPR (지표투과레이더탐사)	○ (택 1)	△	대상사업 및 지반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
	전기비저항탐사		△	
	탄성파탐사		△	

○ : 필수항목, △ :